

FSS/2112-02 : 매출·매입 등 허위계상

- 쟁점 분야: 매출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 결정일: 2014년
- 회계결산일: 2012.1.1~2012.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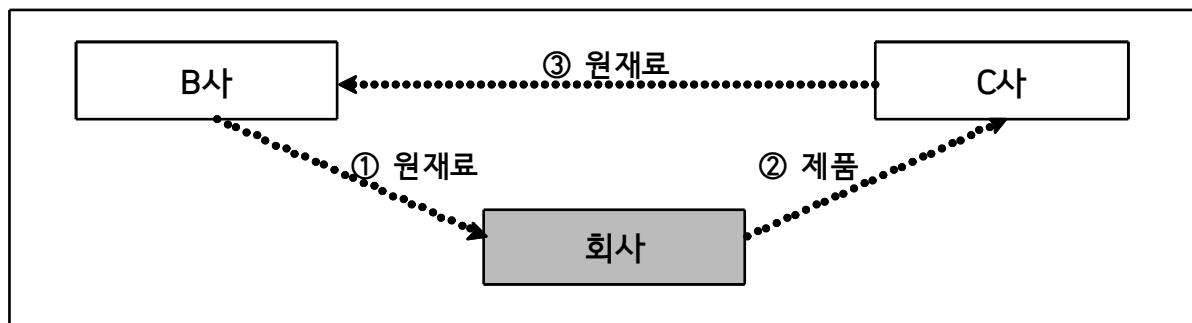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컴퓨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후 최대주주의 친인척이 운영 중인 B사 및 B사의 주요 거래처인 C사 등과 공모하여 매출액 부풀리기 등을 시도하였다.

회사는 원재료 및 제품의 실제 인수·도 및 제조과정 없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주요 원재료를 구매대행사인 B사로부터 구매해 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C사에 판매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고, C사는 회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B사에 원재료로 다시 판매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

회사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매출 238억원, 매출원가 244억원, 매출채권 149억원, 매입채무 58억원 등을 계상하였다.

허위거래 구조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거래처와 공모하여 판매·구매계약 및 관련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의 증거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물의 인수 및 인도가 없었음에도 매출 238억원 등을 허위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히 표현해야 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에 문단14에 따르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만 수익을 인식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실물의 인수 및 인도 없이 허위의 증거자료를 통해 인식한 회사의 매출이 위험과 보상의 이전,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수익인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문단2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1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와 신규 거래처 간의 매출·매입 관련 유의적인 거래가 발생하였음에도, 거래처의 업종이 매출·매입 항목과 무관하며 자산·매출규모 대비 거래규모가 크고 신용상태도 불확실한 점 등을 간과하는 등 동사들의 업종 및 신용상태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신규 거래처에 발송한 채권채무조회서가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 및 기회수된 대금의 입금증빙 확인만으로 미회수된 매출채권 잔액을 확인하는 대체적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 거래처에 미회신 사유를 직접 확인하거나 2차 조회 등 추가절차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최대주주 변경, 매출의 급격한 증가 등 제반 조건을 통하여 회계 부정 및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감사인은 신규 거래처에 대한 매출 등의 실재성 확인을 위해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거래처에 대한 외부조회가 미회신될 경우 대체적 감사절차 등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